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3
----------	------

발의일 : 2015. 9 . .

발의자 : 최정아·황동혁·김현상·김명기·신희근·김재열·
이봉준·양항원·서정택·잔갑봉·김주은·김성근·강한욱·김순희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 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안 제3조제1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 (안 제3조제4항)
- 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 수정 (안 제10조제1항)
-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수정
(안 제31조)
- 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점유·사용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안 제37조제6항)
- 자.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62조, 제64조, 제7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개정안 : 별 첨
 - (2) 입법예고(2015.9.4 ~ 9.10) :
 - (3) 규제사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건축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5.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4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100분의10”을 100분의5”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한다.

제37조제3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6호 중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미터이하(폭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의 단일필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를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제6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p> <p>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p> <p>③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p> <p>① -----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p> <p>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건축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 2명</p> <p>5.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④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 ----- ----- <u>제7조 제7항에</u> ----- -----</p>
<p>④ 심의회 운영, 기능,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u>제7조 제1항에</u>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 ----- <u>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u> ----- ----- -----</p>
<p>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u>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u>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u>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u> ----- -----</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 3. ----- <u>제13조제5항</u> ----- ----- -----</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 3.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13조제4항에</u>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 3. ----- <u>제13조제5항</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 <u>제13조제9항</u> ----- ----- -----</p> <p>②-----<u>제13조제9항</u>----- ----- ----- -----</p>
<p>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u>100분의 10</u>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u>100분의 10</u>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100분의 5</u> ----- ----- <u>100분의 5</u> ----- ----- -----</p>
<p>제35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생략) 1. ~ 7. (생략) <u>< 신 설 ></u></p> <p>② (생략) 1. ~ 4. (생략) <u>< 신 설 ></u></p>	<p>제35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현행과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u>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u>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동작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동작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 <p>4. ~ 5. (생략)</p> <p>6. <u>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미터이하(폭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의 단일필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u></p> <p>제62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분임경리관</u>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p> <p>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⑦ <u>경리관</u>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 -----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u></p> <p>제62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u>재무관</u>에게----- -----</p> <p>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② ----- -----<u>분임재무관</u>이----- -----</p> <p>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⑦ <u>재무관</u>은 ----- ----- ----- -----</p>